



제308회 남양주시의회(제1차 정례회)
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

**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
지원 조례안**

[김지훈(국) 의원 대표발의]

검 토 보 고 서

2024. 06. .

**자치행정위원회
전 문 위 원**

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

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김지훈(국)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 전문체육시설·생활체육시설·직장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
(안 제3조)
- 다.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규정
(안 제4조~제5조)
- 라.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
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체육과
- 라. 입법예고 : 2024. 5. 31. ~ 2024. 6. 6. (6일간) /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우리시 공공체육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를 지원하는 안건입니다.

- 체육시설의 경우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격렬한 활동을 하므로 응급 조치의 필요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나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는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만 해당되어 우리시 공공체육시설 144개소 중 69개소에만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에서

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생활체육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,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[참고자료]

○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

(’24. 1. 1. 기준, 출처: 경기도 실태조사 결과)

구 분	시설개소수	설치개소수	설치율	비 고
합 계	1,934	622	32.2%	
경기도	7	7	100.0%	도립체육시설
남양주시	144	69	47.9%	
파주시	52	47	90.4%	
의왕시	32	20	62.5%	
군포시	15	9	60.0%	
과천시	10	6	60.0%	
광주시	42	24	57.1%	
성남시	95	48	50.5%	
안양시	42	21	50.0%	
고양시	77	36	46.8%	
안산시	63	29	46.0%	
수원시	74	34	45.9%	
김포시	40	18	45.0%	
양주시	90	40	44.4%	
구리시	37	16	43.2%	
광명시	15	6	40.0%	
용인시	71	28	39.4%	
의정부시	51	18	35.3%	
오산시	21	7	33.3%	
부천시	46	15	32.6%	
포천시	96	27	28.1%	
하남시	25	7	28.0%	
시흥시	126	27	21.4%	
가평군	40	7	17.5%	
안성시	70	10	14.3%	
화성시	166	22	13.3%	
이천시	111	11	9.9%	
동두천시	23	2	8.7%	
평택시	59	5	8.5%	
연천군	35	2	5.7%	
여주시	54	2	3.7%	
양평군	105	2	1.9%	

※ 조사항목(20개): 육상경기장, 축구장, 하키장, 야구장, 사이클경기장, 테니스장, 씨름장, 체육관, 게이트볼장, 수영장, 롤러스케이팅장, 사격장, 국궁장, 양궁장, 승마장, 골프연습장, 조정카누장, 요트장, 빙상장, 기타시설

☑ 「응급의료등에관한법률시행령」

제26조의5(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)

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”란 500세대를 말한다.

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을 말한다. [신설 2024.2.6] [[시행일 2024.2.17]]

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[개정 2014.7.7 제25448호(도시철도법 시행령), 2015.7.24, 2020.7.28 제30876호(항만법 시행령), 2024.2.6] [[시행일 2024.2.17]]

1. 철도역사(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)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
 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
 3.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나목3)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
 4. 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
 5. 「한국마사회법」 제4조에 따른 경마장
 6. 「경륜·경정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
 7.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교도소,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, 「출입국관리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, 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년원
 8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
 9.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
 10. 시·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
- [전문개정 2012.8.3]
[본조개정 2021.12.28 제26조의4에서 이동]

☑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·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,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·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·관리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(전문체육시설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·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,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제6조(생활체육시설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제7조(직장체육시설) 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)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

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.

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☑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3조(전문체육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·도 :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
2. 시·군 : 시·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

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4조(생활체육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·군·구 :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·외 체육시설
2. 읍·면·동 :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

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5조(직장체육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. 다만,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·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③ 직장체육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는 시·도지사가 지도·감독한다. 다만,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·감독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- 「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」 제4조(재정적 지원) 시장은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자동심장충격기(AED) 설치비용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2023.12.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실태조사 결과
 - 총 145개소 중 65개소 설치완료, 추가 설치 필요 대수 26대 파악 (※ 근린공원, 어린이공원 내 체육시설 제외)
- 자동심장충격기(AED) 설치비용 (2,300천원/대)
- 소요 예산 : 약 60,000천원 (2,300천원 X 26개소)
 - 향후 경기도 예산편성에 따라 도비확보(30~50% 예상) 후 설치 추진

4. 작성자

체육과장 유형식